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보건부고시(제427호)
 대마(마리화나 혹은 헴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
- 제정일 : 2021년 7월 5일
- 최종개정일 : -
- 출처 : 태국 식품의약품청 (방문일 : 2021년 12월 27일)

공중보건부 고시

(427호) 2021년(불기 2564년)

1979년(불기 2522년) 식품법에 따라 제정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

대마(마리화나와 헵프)를 경제 작물 및 태국인의 지혜로 후원하고 개발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마약 관리 위원회가 고시한 규정, 방법,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대마(마리화나 및 헵프)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마약류 5종의 명칭 명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의해 식품 산업과 기타 산업에 대마(마리화나 및 헵프)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식품 사용은 식품법에 따라야 하며, 오직 식품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1979년(불기 2522년) 식품법 5조 1항, 6조 (1), (2), (4), (5), (6), (7), (8), (9), (10)의 내용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공중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의 성분을 가진 식품은 구체적 통제 식품으로 한다.

2항. 본 고시에서

“대마(마리화나)의 일부분”은 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 허가를 받은 대마초(Cannabis), 학명 *Cannabis indica* Lam. 혹은 *Cannabis sativa* L.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 (1) 껍질, 줄기, 섬유질, 가지 및 뿌리
- (2) 순이 돋지 않거나 꽃송이가 붙어 있지 않은 잎

“헵프의 일부분”은 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 허가를 받은 삼 혹은 헵프(Hemp)라고 불리는 식물, 학명 *Cannabis sativa* L. subsp. *sativa*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 (1) 껍질, 줄기, 섬유질, 가지 및 뿌리
- (2) 순이 돋지 않거나 꽃송이가 붙어 있지 않은 잎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은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 Δ^9 -THC)을 의미한다.

“포장물(package)”은 가장 작게 포장한 용기 혹은 판매용 식품을 담은 식품 포장용기를 뜻한다. 여기에는 소포장 용기를 담은 용기나 상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존재 시)

3항. 다음과 같은 대마(마리화나 및 헵프)의 일부분이 함유된 식품은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

- (1) 영아 식품과 성장기용 영유아 식품
- (2) 영아용 조제유 및 성장기용 영유아 조제유
- (3) 영유아용 식품보조제
- (4) 카페인 혼합 음료
- (5) 공중보건부 장관이 고시하여 규정한 기타 식품

- 4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의 성분을 가진 식품은 아래와 같은 품질 혹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
- (1) 한 포장물당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 1.6mg 이하 함유
 - (2) 한 포장물당 칸나비디올 성분 1.41mg 이하 함유
- (1)과 (2)에 따른 검사 방법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Chromatography, HPLC) 혹은 더 높은 성능의 원리를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검증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 (3) 잔류농약은 “잔류 농약 함유 식품”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 (4) 오염 물질은 “오염 물질 함유 식품 기준”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 (5)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또는 기준, 조건 및 검사 방법”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 (6) 위와 같은 종류의 식품의 품질 혹은 기준은 경우에 따라 관련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 5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의 성분을 가진 식품 생산자는 적법한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취득해야 하며, “생산 방법,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식품 보관”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지에서 대마와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받아 사용한 기록해 두어야 한다.
- 6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규정된 종류와 양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7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의 포장용기 사용은 “포장용기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 8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 표시는 경우에 따라 “용기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및 라벨 표시를 특별히 규정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 9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 표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 (1) “경고” 내용은 사각형 틀 안에 1.5mm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기되어야 하며, 글자의 색상은 틀의 배경 색상과 대조되어야 하고 틀의 색상은 라벨 바탕색과 대조되어야 한다.
 - (2) “아동,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
 - (3)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섭취를 멈추어야 한다”는 내용
 - (4) “THC 혹은 CBD 성분에 알려지가 있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 (5)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을 삼가거나, 기계와 관련된 작업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

- (6) “포장물(package)당 1.6mg 이하의
- (7) “하루에 포장물(package) 2개 이상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
- (8) 식품에 들어간 “마리화나”, “헵프” 또는 대마(마리화나 및 헵프) 일부분의 명칭은 식품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9) 공중보건부 장관이 고시한 기타 내용

10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이 함유된 식품 라벨에 영양 관련 참고 내용 표시는 “영양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11항. 대마(마리화나 혹은 헵프)의 일부분이 함유된 식품 라벨의 건강 관련 참고 내용 표시는 “식품의 건강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12항. 이 고시는 관보에 고시한 날의 익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불기 2564년) 7월 5일 고시
아누틴 찬위라꾼
공중보건부 장관